EU 복합식품 수입규정 관련 QnA

동 자료는 EU로 복합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동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EU에서 2021.4.21. 시행하는 복합식품 수입 관련 규정, 그 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정부가 EU와 질의/응답한 사항과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웨비나'(aT센터 주관, '21.2.23.) 시 EU 위원회의 복합식품 담당자와 프랑스 법률사무소의 강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U에서는 최근('21.2.1.) 복합식품 대응 HS Codes를 당초 14개에서 24개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국경에서의 검사·검역이 면제되는 저위험 식품 목록을 최종 공표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EU 규정 변경 등의 사유로 동 자료의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수출업체는 EU로 복합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수입자 또는 해당국가 관계 기관에 최신 EU 규정에 근거한 해당 제품의 수입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복합식품

Q1.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s)이란?

○ 식물 재료와 결합된 동물유래의 가공제품(식육, 우유, 알, 수산제품 등)을 함유하는 식품, 이때 동물유래 성분은 반드시 가공된 제품이어야 함.

○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원재료를 함유하거나 식용 목적이 아니라면 복합식품이 아님

Q2. 복합식품 대상 품목은?

○ 아래 HS CODE에 해당하는 식품 중 복합식품 정의에 부합하는 식품

1517, 1518, 1601 00, 1602, 1603 00, 1604, 1605, 1702, 1704, 1806, 1901, 1902, 1904, 1905, 2001, 2004, 2005, 2101, 2103, 2104, 2105 00, 2106, 2202, 2208

☞ 복합식품 예시

- 액젓 등을 함유한 김치
- 수산물 엑기스 등을 함유한 된장, 간장 등 소스류
- 식육 또는 수산물 분말 등이 함유된 라면스프가 동봉된 라면
- 가스오부시가 함유된 미소된장국
- 우유나 계란 제품이 함유한 과자류, ·빵류, 초콜릿 등
- 우유성분이 함유된 음료, 아이스크림 등
- 모짜렐라 치즈를 포함한 피자
- 그 외 완전 조리된 식육가공제품과 식물 원료를 함유한 피자, 파이, 카레 등

* 식육패티와 허브, 야채 등을 함유한 햄버거, 빵가루를 입힌 생새우 등은 가공되지 않은 동물유래 제품을 사용하였으므로 복합식품이 아님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시행 관련 대상 품목(24개)

1601 00(소시지, 이와 유사물품)	1602(기타 조제 보존 처리한 육, 설육, 피)
1603 00(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추출물과 즙)	1604(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 조제 캐비아 대용물)
1605(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	1901(맥아 추출물, 곡물가루)
1902(파스타, 면 등)	1905(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2004(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냉동에 한함)	2005(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로 냉동하지 않은 것)
2103(장류, 소스, 마요네즈)	2104(수프, 브로드, 균질화한 혼합 조제품)
2105 00(아이스크림, 빙과류)	2106(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커피프리머, 단백질농축물 등)
1517(마가린 등 동,식물성 지방)	1518(동물성,식물성지방과 이들의 분획물)
1702(그밖의 당류, 당시럽, 인조꿀)	1704(설탕 과자)
1806(초콜릿, 코코아함유 조제식품)	1904(곡물,곡물가공품을 팽창, 볶아서 제조한 식품)
2001(식초, 초산으로 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등)	2101(커피차, 마테 등 커피대용품)
2202(설탕, 그밖의 감미료)	2208(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콜, 증류주 등)

Ⅱ. 복합식품 수출 가능여부

Q3. 국내 생산 식육함유 복합식품은 수출이 가능한가?

○ 국내 생산 식육 함유 복합식품은 EU로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제품의 원료 제품이 EU 동물위생조건에 따른 수입승인과 국가 잔류물질 계획의 승인이 모두 되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산제품만 상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Q4. EU 또는 EU 수입승인국가산 식육가공제품을 사용하면 수출이 가능한가?

○ 식육 함유 복합식품은 복합식품에 사용한 식육가공제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EU로의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복합식품의 수입승인은 복합식품 내 함유된 동물성 가공제품의 원산국가가 아닌 복합식품 생산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Q5. 국내산 닭고기 가공제품을 사용한 라면 등의 복합식품은 수출이 가능한가?

○ 열처리된 가금육 가공제품은 EU의 동물위생 조건에 따른 수입승인 목록과 국가 잔류물질계획 승인 목록에 모두 등재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국내 열처리 가금육 가공제품의 EU 수출 협의는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 당장 국내 닭고기 가공제품을 사용한 복합식품의 수출은 어렵습니다.

○ 향후 EU와의 수출협의가 마무리되고, 해당 제품 생산시설이 EU에 등록이 된 이후 수출이 가능합니다.

Q6. 국내 생산 유·알·벌꿀 함유 복합식품은 수출이 가능한가?

○ 국내 생산 유・알 등 함유 복합식품은 EU로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국내 가축질병 발생 상황, 국가 잔류물질 계획 승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유, 알, 벌꿀의 EU 수입승인국가가 아닙니다.

Q7. EU 또는 EU 수입승인 국가산 유알 등 가공제품을 사용하면 수출이 가능한가?

○ 유・알 등 함유 복합식품 중 냉장・냉동 식품은 복합식품에 함유된 유・알 등 가공제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EU로의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식육이나 냉장・냉동 복합식품과는 다르게 유・알・벌꿀 등을 함유한 실온 복합식품인 경우 EU산 또는 EU가 잔류물질 계획을 승인한 국가산 원료를 사용한다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 경우라도 위와 같은 원료 출처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EU의 잔류물질 승인국가 목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유, 알, 벌꿀에 대해 원료 출처 명시 조건으로 잔류물질 승인국가 목록 등재를 EU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Q8. Q7 답변과 관련하여 현재 EU가 수입승인한 국가산 유·알·벌꿀을 사용한 실온보관 복합식품을 EU로 수출하고 있는데 새 규정으로 인해 수출이 금지되나?

○ 우리나라는 유・알・벌꿀에 대해 EU로부터 국가 잔류물질 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EU 규정에서도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EU에 유・알 등의 잔류물질 승인 국가로 등재되지 않았음에도 그 간 EU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는 ’21.4.21.이후부터는 각 EU 회원국에서 동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입 통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9. 현재 EU에서 수입한 50% 미만의 우유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아이스크림을 EU로 수출 중입니다. 새 규정 이후 수출이 금지되나?

○ Q7에서의 답변과 동일하게 현재 규정에서도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더욱이, EU의 새로운 규정 시행에 따라 냉장·냉동 보관·유통 복합식품은 향후 우리나라가 EU 수입 승인 원료 사용조건으로 국가잔류물질계획을 승인받더라도 EU로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Q10. 국내산 액젓을 함유한 김치는 수출이 가능한가?

○ 국내산 액젓 생산시설이 EU에 등록되어 있다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 김치 등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유래 가공제품은 해당 제품이 EU로 수입이 승인된 국가에 소재한 EU 승인시설에서 유래하여야 하며,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새로운 규정이 아닙니다.

○ 그 간 김치 등에 포함되어 있는 액젓 공장의 EU 등록시설 여부와 무관하게 EU로 수출한 사례가 있으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는 '21.4.21. 이후부터는 각 EU 회원국에서 동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EU 승인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한 액젓을 함유한 김치는 수입통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Ⅲ. 동물유래 가공제품 생산시설의 EU 등록

Q11. 복합식품 생산시설도 EU 등록이 필요한가?

○ 복합식품 생산시설은 EU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합식품 내 함유된 동물유래 가공제품 생산시설만 EU 등록이 필요합니다.

Q12. 국내 동물유래 가공제품 생산시설의 EU 등록 대상은?

○ 복합식품 내 함유되는 국내 수산가공제품 생산시설은 EU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식육, 유, 알 등은 EU 수입승인이 되지 않아 국내 생산 식육, 유, 알 등의 가공제품은 복합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13. 수입 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2차 가공하는 수산물 가공제품 생산시설도 EU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 네. 수입 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하여, 재 가공한 국내 수산물가공품 생산시설도 EU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14. 된장 등 복합식품 내에 함유된 야채 엑기스에 국내 수산물가공제품을 미량 함유하는 경우, EU의 작업장 승인 대상은 야채 엑기스 제조공장인지? 아니면 둘 모두 작업장 승인 대상인지?

○ 네. 수산물 가공업체만입니다.

Q15. 수산가공제품 생산시설의 EU 등록 절차는?

○ 수산가공제품 생산시설의 EU등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생산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에 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생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서류 및 현장점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 등록증이 교부된 생산시설은 EU에 등록사항을 통보하게 되며, EU측 승인시 수출이 가능합니다.

Q16. 수산가공제품 생산시설의 EU 등록시 소요 시간은?

○ 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에 대한 국내 민원처리는 15일이 소요되나, EU측의 승인 기간은 특정할 수 없음. 다만, 개정된 법령 적용에 따라 원활한 수출을 위해 EU측의 신속한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Q17. 수산가공제품 EU생산시설 등록 후 점검 등을 받나요?

○ 등록 후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으며, 상대국의 요구 등에 따라 필요 시 수시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8. 수산가공제품 생산시설의 EU 등록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 신청인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5호서식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 생산·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 생산·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이행계획서
- 생산·가공용수의 수질검사 성적서(EU수질검사항목 기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 EU수질검사는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06호(2020.7.31.)「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별표 1〕 Ⅱ. 개별기준 나. EU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1)가공용수에 관한 조건 충족 필요(EU규정반영)

** 신청절차 및 관련서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참고

www.nfqs.go.kr> 검역·검사 메뉴> 생산가공시설 > 민원처리 안내

Q19. EU 등록 신청을 위한 수질검사 기관은?

○ EU 규정을 반영한 수질검사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총 145개이며 검사기간은 4주 내외 소요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문의 필요(Tel. 02-2637-1234)

Ⅳ. 복합식품 내 동물유래 성분 확인

Q20. 복합식품 내 수입 동물유래 가공제품 생산시설 확인

○ EU 승인작업장에서 수입한 유·알 등 동물유래 가공제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복합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된 동물유래 가공제품의 생산시설이 EU에 승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복합식품 생산업체는 사용하는 수입 동물유래 가공제품 생산시설의 EU 등록번호, 명칭, 주소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정부증명서 또는 수입자가 사설인증서 발행 시 요구되어 질 것입니다.

Q21. 동물유래 가공제품 승인시설은 어디서 확인 가능하나요?

○ 아래 EU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승인 작업장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ebgate.ec.europa.eu/sanco/traces/output/non_eu_listsPerCountry_en.htm

Ⅴ. 정부 증명서와 사설 인증서

Q22. 정부 증명서 발급대상은?

○ 우리나라는 수산가공제품을 함유하는 냉장·냉동 복합식품만 정부 증명서 발급 대상입니다.

* 정부증명서 대상 품목은 식육 함유 복합식품과, 식육을 제외한 동물유래 가공제품을 함유한 냉장·냉동 복합식품입니다. 우리나라는 EU로 식육함유 복합식품과 수산가공제품을 제외한 동물유래 가공제품을 함유한 냉장·냉동 복합식품은 EU로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Q23. 정부 증명서 발급절차는?

○ 관할지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출 영문 위생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38호서식의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첨부서류)

-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증
- 품목제조보고서(기구, 용기 포장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
- 수출신고필증
-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 복합식품 정부증명서 기재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제조사(판매처)의 원료사용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품의 경우), 수입위생증명서 사본(수입품의 경우) 등 원료사용 증명이 가능한 증빙자료

Q24. 사설 인증서 발급대상은?

○ 식육을 제외한 유, 알 등 동물유래 가공제품을 함유한 실온 복합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설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EU에서 공표 예정인 저위험식품 목록에 포함되는 복합식품이라 하더라도 사설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25. 사설 인증서 발급은 누가하나요?

○ 사설 인증서의 발행 주체는 수입자 입니다. 하지만, 수입자가 복합식품 내 함유하는 동물유래 가공제품의 원산지 국가와 생산시설, 그리고 열처리 등 위험저감 조치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6 사설 인증서 서식은 어디서 찾을수 있나요?

○ 2020/2235/EU ANNEX Ⅴ. 사설 인증서 서식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0/2235/oj

Q27. 정부 증명서(사설 인증서)를 컨테이너 각각에 첨부해야 하나요?

○ 수출 선적 건 당 하나의 증명서(인증서)만 구비하면 됩니다.

Q28. EU 국경에서의 검사가 면제되는 저위험 품목은?

○ 저위험 품목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CN code	제품
1704, 1806, 1806 31 00, 1806 32, 1806 90 11, 1806 90 19, 1806 90 31, 1806 90 39, 1806 90 50, 1806 90 90.	과자류(사탕 포함), 초코렛, 코코아 함유 기타 조제식품 등
1902 19, 1902 30, 1902 40,	파스타, 누들 등
1905 10, 1905 20, 1905 31, 1905 32, 1905 40, 1905 90,	빵, 케이크, 비스킷, 와플 등
2001 90 65, 2005 70 00, 1604,	생선으로 채워진 올리브 등
2101	커피, 차 등
2104	최종소비자용 조미료, 수프 스톡 등
2106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키토산 등
2208 70	리큐르 등

○ 국경 검사가 면제되는 저위험 식품도 화물의 도착지 등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검사 시스템에 따라 검사를 받게 되므로 사설 인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VI. 복합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Q29.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복합식품 생산업체도 점검을 받게 되나요?

○ EU 수입조건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부록

○ 수산가공제품 생산시설 등록절차, 등록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생산시설 소재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서명	연락처	관할구역	비고
본원	051-400-5731	행정사항 총괄	
부산지원	051-602-6041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중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인천지원	032-880-3813	인천광역시 중 중구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중 김포시·부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수원시·오산시·화성시	
인천공항지원	032-740-2993	인천광역시 중 중구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서울지원	02-2660-9622	서울특별시, 경기도 중 김포시·부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수원시·오산시·평택시·안성시·화성시를 제외한 전지역	
평택지원	031-8053-7719	경기도 중 평택시·안성시, 충청북도 중 보은군·영동군·옥천군을 제외한 전지역, 충청남도 중 당진군·태안군·서산시·아산시·천안시	
장항지원	041-956-7395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중 보은군·영동군·옥천군, 충청남도 중 당진군·태안군·서산시·아산시·천안시를 제외한 전지역	
전주지원	063-276-8527	전라북도	
목포지원	061-288-7306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중 목포시·나주시·영광군·장성군·담양군·함평군·영암군·무안군·진도군·신안군	
완도지원	061-550-0677	전라남도 중 완도군·강진군·해남군·장흥군	
여수지원	061-655-0520	전라남도 중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고흥군·화순군·보성군	
제주지원	064-728-6308	제주특별자치도	
통영지원	055-640-3130	경상남도 중 김해시·밀양시·양산시를 제외한 전지역	
포항지원	054-246-8038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릉지원	033-660-7231	강원도	

○ 증명서 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합니다.

식약처 본부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연락처

부서명	연락처	관할구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8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640-1320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 및 연천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3	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 및 연천군은 제외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51-602-6111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42-480-871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62-602-1311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53-589-2711	대구광역시, 경상북도